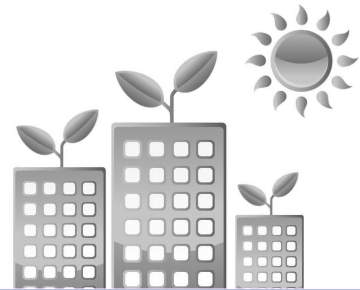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개정

국토해양부는 현행 20%인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를 일부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편집자주]



□ 주요 개정내용

항목	현행	개정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신축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에너지사용량을 15~20% 이상 절감토록 의무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25~30% 이상으로 강화(전용면적 60㎡ 이하 : 25% 이상 절감, 전용면적 60㎡ 이상 : 30% 이상 절감)
LED조명기구 사용 의무화	세대 내 조명, 공용부분의 보안등 및 지하주차장의 조명등은 LED조명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조명기기 에너지효율화 및 백열전구 퇴출을 위해 세대 내 및 공용부분 조명을 LED조명 또는 고효율조명기기를 사용토록 의무화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의무화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를 의무화	상향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달성을 위해 모든 주택에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의무화
에너지 절감률 평가기준 개선	에너지 절감률 달성 여부를 단위세대를 이용하여 평가	아파트의 구조적인 특성상 층별 열손실 정도가 달라 에너지절감률 평가기준을 단위세대에서 단지전체 평균값으로 변경
전력사용량 재정의	전력 사용량을 조명 에너지와 콘센트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	콘센트소비전력량은 전력량을 측정하여 에너지 절감률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력사용량에서 제외
에너지 절감률 계산방법 개선	일반아파트는 에너지절감률 계산시 바닥과 지붕이 동시에 면한 경우가 없어 동시 계산을 위한 계산식 불필요	바닥과 지붕이 동시에 접한 주택의 형태(테라스하우스)가 도입되어 동시 계산을 위한 계산식 추가 반영

